

체육부운영규정 시행지침

시행 : 2024.09.0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체육부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부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인원 및 장학) 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선수들의 종목별 선발인원 및 체육실기장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1. 매 학년도 신입생 선수 선발 총 인원은 체육특기자 선발연구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며, 각 종목별 선발 인원은 체육부장과 해당 운동부 지도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학금은 입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실기장학(수업료, 입학금 포함), 체육부기술장학, 대회성적우수장학, 현장연수활동장학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총인원은 체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3. 운동부별 체육실기장학 인원은 해당 운동부 지도자와 체육부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운동부의 학생에 대한 평가는 [별표1]의 평가기준 및 [별표2], [별표3]의 평가표에 의거하여 해당 운동부의 지도자가 평가하며 지도자가 없는 운동부는 체육부장이 평가한다.

제3조(종목구분) 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부는 다음 각 호의 종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단체종목 : 축구(남), 농구(남), 야구(남), 배구(남), 핸드볼(남), 필드하키(여), 아이스하키(남), 럭비(남)
2. 개인종목 : 배드민턴(남), 체조(남), 태권도(남, 여), 양궁(남, 여), 골프(남, 여)

제4조(교비지원) 체육부 운동종목의 교비지원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운동부별 운영인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각 운동부별 당해 연도의 운영인원은 해당 운동부의 모집인원을 고려하여 각 운동부 지도자와 체육부장의 협의로 체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교비 예산 지원은 장학금, 전지훈련, 대회출전 참가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하며, 지원항목은 <별표4>와 같이 한다.
3. 럭비(남), 필드하키(여), 아이스하키(남), 3개 종목의 지원은 종합적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체육부장이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영) 체육부에 지원되는 교·내외의 기금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1. 교내·외 인사가 특정 운동부나 체육부에 지원하는 기금은 체육부 육성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2. 각 운동부에 지원되는 육성발전기금의 20%이내에서 체육부 공통경비 명목으로 적립하여 체육부 운영 필요경비로 기금을 사용한다. (목적지원금 예외)
3. 체육부육성기금의 운용은 ‘체육부 발전기금(육성기금)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4. 각 운동부의 기금으로 비운영인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종목신설 및 폐지) ① 대학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절차를 통해 운동부 종목을 신설할 수 있다.

② 종목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 종목의 중장기 예산확보 및 운영계획의 제출과 현행 전체 운영종목 지도자의 동의를 얻어, 체육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과정을 통해 신설한다.

③ 대학 재정상황 및 정책적 결정에 따라 절차를 통해 운동부 종목을 폐지할 수 있다.

④ 체육부 운영종목은 경기실적을 평가 및 분석하여 실적이 저조하거나, 인권침해 및 각종 폭력, 입학부정, 지도자 및 선수의 각종 부정행위 등 종목의 폐지가 필요할 때는 체육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과정을 통해 폐지할 수 있다.

제7조(공상환자 지원) 대회, 연습경기, 훈련 중 부상을 당한 학생에 대한 공상 의료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운동부 학생은 개인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개인의 보험가입 결격사유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비 실부담액의 50%는 교비 지원, 50%는 개인이 부담한다.
3. 개인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의료비의 50%는 교비로 지원한다.
4. 제1,2,3,4호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이 극히 곤란하여 부상치료가 불가능한 자는 체육부장이 판단하여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출장비 및 출전비 지급) 체육부 교직원의 출장비 및 출전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출장비는 [별표5] 체육부 출장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출전비는 [별표6] 체육부 출전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9조(포상비 지급) ①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 지도자 및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지도자는 단체전 우승시 감독 200만원, 코치 100만원을 지급하며 감독이 없는 운동부의 코치는 감독 기준으로 지급한다. (연간 3회에 한해 지급)
2. 선수는 <별표7> 포상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포상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으며 상위 입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② 리그대회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1. 라운드 우승, 준우승 : 라운드(1,2차) 중 1회만 지급
 2. 챔피언 결정전 : 우승시에만 지급
- ③ 국제대회 포상금은 [별표8]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 ④ 우승지원금은 체육부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체육부장이 지급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① 각 운동부 소속 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운동부 입·퇴부) ① 각 운동부는 운영인원 및 비운영인원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② 체육부 소속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부하여야 한다.

1. 휴학자
 2. 자퇴자
 3. 운동 포기자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는 체육부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부시킬 수 있다
1. 경기력, 기여도, 학업성적, 훈련태도,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성적이 저조한 자
 2. 운동부 무단이탈 및 감독, 코치의 지도에 저항하는 자
- ④ 입·퇴부에 대한 선수 평가는 [별표1]의 평가 기준 및 [별표2], [별표3]의 평가표에 의거 해당 운동부의 감독 및 코치가 평가하며 지도자가 없는 운동부는 체육부장이 평가한다.
- ⑤ 체육대학에 재학생중 [별표1]의 평가성적이 우수한 선수는 운동부에 입부 및 재입부 할 수 있으며, 체육부운영소위원회의 심의 후 체육부 선수로 입부할 수 있다.
- ⑥ 체육실기우수자전형으로 입학하지 않은 외국인 선수는 체육부운영소위원회 및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부 선수로 입부할 수 있다.
-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비입부 하여 훈련 할 수 있으며, 각 운동부의 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예치금을 납부 후 해당 고등학교의 허가를 받은 신입생
 2. 입학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국어 입학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신입생

제12조(체육부 선수 서약) 체육부 선수는 매 학년도 초에 [별표1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외국인 및 가계곤란자는 [별표 11] 제7호의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지침의 개정) 본 지침은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승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2014학년도 우승지원금 지급은 본 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쇼트트랙 종목에 대한 경과조치)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쇼트트랙 선수는 경기복, 단체복, 출전비(지방경기에 한함)를 지원한다.

부칙

본 지침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지침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체육실기장학 및 입·퇴부 평가기준

체육실기장학 및 입·퇴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비율	평가기준							
신입생	입학성적	50%	입학성적 총점 * 0.05 (입학성적 1,000점 만점)							
	실기능력	30%	우수: 26점~30점, 보통: 20점~25점, 부족: 15점~19점							
	면접 (잠재력·태도발전가능성)	20%	우수: 18점~20점, 보통: 13점~17점, 부족: 10점~12점							
재학생	경기력·기여도	60%	우수: 51점~60점, 보통: 41점~50점, 부족: 30점~40점							
	학업성적	20%	직전학기 평점평균에 따른 점수 부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평점평균(4.3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환산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이상-3.0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이상-2.5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body> </table>	평점평균(4.3기준)	환산점수	3.0이상	20	2.5이상-3.0미만	15	2.0이상-2.5미만
평점평균(4.3기준)	환산점수									
3.0이상	20									
2.5이상-3.0미만	15									
2.0이상-2.5미만	10									
2.0미만	5									
우수: 9점~10점, 보통: 7점~8점, 부족: 5점~6점										
훈련태도	10%	우수: 9점~10점, 보통: 7점~8점, 부족: 5점~6점								
생활태도	10%	우수: 9점~10점, 보통: 7점~8점, 부족: 5점~6점								

※ 입부 기준 : 80점이상

※ 재입부 기준 : 80점이상

※ 퇴부 기준 : 50점이하

[별표 2] ○학년도 ○학기 체육실기장학 및 입부 평가표(신입생)

()학년도 ()학기 체육실기장학 및 입부 평가표(신입생)

평가대상	총 목명 : 평가인원 :	평가자	○○○감독 ○○○코치 (인) (인)
------	------------------	-----	------------------------------

연번	수험번호	성명	학과	입학성적 (50점)		실기 능력 (30점)	면접 (20점)	총점 (100점)	장학 수혜			입부 결정 (O,X)	비고
				총점	점수				장학	반장학	비장학		

특기사항	
------	--

※ 면접 : 잠재력·발전가능성·태도

[별표 3] ○학년도○학기 체육실기장학 및 입·퇴부 평가표(재학생)

()학년도 ()학기 체육실기장학 및 입·퇴부 평가표(재학생)

평가대상	종 목 명 : 평가인원 :	평가자	○○○감독 ○○○코치	(인) (인)
------	-------------------	-----	----------------	------------

특기사항	
------	--

[별표4] 체육부 운영인원 및 교비지원

체육부 운영인원 및 교비지원

※ 종목별 모집인원 및 운영인원

구 분		2014 모집 인원	2015 모집 인원	2016 모집 인원	2017 모집 인원	2018 모집 인원	2019 모집 인원	2020 모집 인원	비고
종목구분	종목								
단체종목	축구(남)	12	12	12	12	12	11	8	
	농구(남)	9	9	9	9	9	9	6	
	야구(남)	11	11	11	11	11	10	8	
	배구(남)	8	8	8	8	8	7	4	
	핸드볼(남)	8	8	8	8	8	8	4	
	럭비(남)	10	10	10	10	10	10	8	
	아이스하키(남)	5	5	4	4	5	5	4	
	필드하키(여)	5	5	4	4	4	3	3	
개인종목	배드민턴(남)	5	5	5	5	5	5	4	
	기계체조(남)	5	5	5	5	5	5	4	
	양궁(남,여)	2	2	4	4	3	3	3	
	태권도(남,여)	25	25	32	32	32	32	32	
	골프	15	15	15	15	15	15	6	
	합계	120	120	127	127	127	123	94	

※ 당해연도의 운영인원은 해당년도를 포함한 과거 4년의 모집인원의 약 60%로 하며, 종목별 운영인원은 체육부운영소위원회에서 결정함

※ 종목별 운영인원은 신입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교비 지원 항목

종류	항목	비고
----	----	----

교내장학금	체육실기장학	각 운동부별 운영인원 내 재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장학금지급
	체육부 기숙장학	제2기숙사 거주를 위한 기숙사 장학
	대회성적우수장학	경기실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
	현장연수활동장학	현장연수활동지원에 필요한 장학
기타학생지원비	훈련비	연습경기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비용
	대회출전비	국내외 대회 출전과 관련한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용품구입비	훈련복, 출전유니폼, 운동용품 및 각종 운동용품 구입비 등
	전지훈련비	연간 10일 이내로 전지훈련비
	기타	대회출전을 위한 선수등록비 등

※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

[별표5] 체육부 출장비 지급 기준

체육부 출장비 지급 기준

구분	대상	지급기준
출장비	체육부장, 직원	-본교 여비규정에 준함
	감독 및 코치	-본교 여비규정에 준함 -재원 : 육성지원금
스포츠교류 지원비	체육부장, 감독, 코치	-연간 200만원 이내

※ 대외 스포츠교류와 관련한 종합적인 활동 및 제 비용의 출장비는 상기 스포츠 교류 지원금 지급으로 갈음함.

[별표6] 체육부 출전비 지급 기준

체육부 출전비 지급 기준

구분	대상	숙박비(1박)	식비(1일)	잡비(1일)	합계(1일)	교통비
학교반경 50km 이내	감독/코치 선수/기타	0		10,000	10,000	항공, 버스 배차, 현지교통비 및 렌트카 필요시 별도 지급
학교반경 50km 이상/ 숙박을 하는 전지훈련	감독/코치	70,000	30,000	10,000	110,000	항공, 버스 배차, 현지교통비 및 렌트카 필요시 별도 지급
	선수	35,000	30,000	10,000	75,000	

		※ 숙박비 지급 세부기준 학생 1인 출전시 70,000원 학생 2인 이상 출전시 35,000원 버스기사 70,000원			
해외 출전	올림픽게임 및 아시안게임	선수	체육부장이 정하여 지급		
	각종국제대회 (공식시합)	감독, 코치	500,000	대회기간과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지급	
		선수	200,000		

※ 잡비는 식비, 간식비, 교통비, 기타 대회출전 관련 경비로 사용 가능

※ 해당 운동부의 육성지원금 또는 외부지원금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감독, 코치의 대회 출전에 따른 출장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고 출전비로 갈음함

[별표7] 선수 포상비 지급 기준

선수 포상비 지급 기준

[단위: 만원]

팀명 구분	전국대회 엔트리 (명)	대학팀 등록현황 (팀)	우수 성적 지원금 / 1인당					
			우승	준우승	4강	단체 우승	개인 우승	개인종합 우승
축구(남)	18	72	20	10	=	-	-	-
농구(남)	12	12	20	10	-	-	-	-
야구(남)	18	31	20	10	=	-	-	-
배구(남)	18	8	20	10	-	-	-	-
핸드볼(남)	16	12	20	10	-	-	-	-
배드민턴(남)	6	15	-	-	-	20	20	=
체조(남)	7	7	-	-	-	20	10	20
필드하키(여)	18	4	20	10	-	-	-	-
아이스하키(남)	22	5	20	10	-	-	-	-
럭비(남)	22	10	20	10	-	-	-	-
태권도(남,여)	16	77(55/22)	-	-	-	20	10	-
양궁(남,여)	4	12	-	-	-	20	10	20
골프(남,여)	-	-	-	-	-	20	10	20

[별표8] 올림픽 및 국제대회 우수성적 포상비

올림픽 및 국제대회 우수성적 포상비

[단위: 만원]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세계대학선수권대회			기타 국제대회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300	200	100	100	50	30	50	30	20	30	20	10	국내대회와 동일

[별표 9] 체육부 기숙사 생활 규칙

체육부 기숙사 생활 규칙

각 운동부 학생은 다음 세부내용에 준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퇴출

- 가. 마약, 도박, 절도,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행위
- 나. 남/녀 이성간의 기숙사 출입 행위 (단, 허락 시에는 예외)

2. 중요규칙 위반

가. 중요규칙 위반 행위

- 폭력적 통제, 집단 괴롭힘, 얼차려, 폭언 등 타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호실내 위험물질(부탄가스, 인화물, 전열기구, 취사도구) 반입 및 사용
- 생활관내 공공기물 및 시설물의 고의적인 파손 행위
- 기숙사 내 음주, 흡연
- 무단 이탈 (일요일~금요일 10시 40분, 토요일 24시 이후 출입금지)
- 사행성 놀이 (화투, 카드, PC게임)
- 기숙사 내 폭행, 소란(만취)

나. 징계방법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30일 퇴실 장학제외(1학기)	1년간 퇴실 장학제외 (1년)	퇴출

3. 일반규칙 위반

가. 일반규칙 위반 행위

- 샤워장 규칙 위반 (점호·청소시간에 샤워장 사용, 탈의실 내 신발 착용)
- 복장 위반 (복장 불량, 슬리퍼 착용 등)
- 화장실 내 샤워
- 호실 내 TV 설치 (경기분석실 TV 시청 가능)
- 취침 소등 및 PC 사용 위반
(11시 이후 소등 및 11시30분 이후 PC 사용금지, 학업 레포트 허용)
- 식사 배달 금지 (치킨, 피자 등 간식에 한하여 10시 30분까지 허용)
- 기숙사 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음악감상, 악기연주, 소음 등의 신고접수시)
- 기숙사 내 허가없이 외부인에게 숙식 제공
- 변기, 세면대, 하수구 등에 고의로 이물질(물티슈, 음식물 등)을 넣어 막히게 하는 경우
- 호실내 50ℓ이상 냉장고 반입

나. 징계방법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경고	10일 퇴실	30일 퇴실 장학제외(1학기)	퇴출

[별표 10] 운동부 입·퇴부 신청서

운동부 입·퇴부 신청서		담당	계장	실장	체육부장				
종 목		학과		학번	학년				
성 명			연락처						
주 소									
입·퇴부사유 (해당사항에 ↘)	<input type="checkbox"/> 일반휴학 <input type="checkbox"/> 군입대휴학 <input type="checkbox"/> 자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입부 ※ 입부·재입부 시 학과장 승인 필요								
<u>구체적 사유 (상세 기술 및 증빙서류 첨부)</u>									
<p>상기와 같이 체육특기자를 포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본 인</td> <td style="width: 50%;">(인)</td> </tr> <tr> <td>보호자</td> <td>(인)</td> </tr> </table>						본 인	(인)	보호자	(인)
본 인	(인)								
보호자	(인)								
체 육 부 장 귀 하			<input type="checkbox"/> 코 치	<input type="checkbox"/> 감 독					

[별표 11] 서약서



서 약 서

소 속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학과	학년
운동부명		학번		성명

상기 본인은 경희대학교 체육부의 _____부 선수로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학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경희대학교의 학생과 체육대학의 운동부 선수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충실하며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 경희대학교의 학칙과 체육부의 제반규칙을 준수하여 학교와 체육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체육부 활동에 있어서 올바른 정신과 예의범절을 지켜 타의 모범이 된다.
- 체육실기장학생으로 입학한 경우라도 대회성적 및 학업성적이 저조하고 불성실한 훈련·생활태도, **타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등** 기타 제반 규칙을 위반할 시에는 비장학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 가. 매학기 국가장학 및 교내장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 나. 장학생은 매 학기 평가를 통해 선발하며 교내장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교내장학 기준 :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
- 체육실기우수자로 입학한 경우라도 경기력, 기여도, 학업성적, 훈련태도, 생활태도, **폭력적 통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성적이 저조한 선수 및 무단이탈, 감독·코치의 지도에 저항하거나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하였을 경우 해당 운동부에서 퇴출될 수 있다.
- 체육실기장학 및 운동부 입·퇴부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자
신입생	입학성적 50% 실기능력 30% 면접 20% (잠재력·발전가능성·태도)	- 해당 운동부 감독,코치
재학생	경기력 및 기여도 60% 학업성적 20% 훈련태도 10% 생활태도 10%	- 지도자가 없는 운동부는 체육부장이 평가

- 체육부 기숙사에 입사하는 선수는 연간 100만원의 식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20 . . .

서 약 인 : (인)
보 호 자 : (인)

경희대학교 체육부장 귀하